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707
----------	------------

제안년월일 : 2026년 6월 1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수영장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적용 시, 시설의 명칭에 근거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설의 조건 부합 여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요금을 정하지 않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료 산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출 기준 및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립체육시설의 대상에 따라 감면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호라목).
-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산출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2호아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안 별표 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하 <u>운영</u> 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 ----- ----- ----- ----- “ <u>운영</u> ”이라 ----- ----- ----- -----.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 ----- ----- ----- ----- “ <u>운영</u> ”이라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u>하는 자</u> 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u>하는 자</u> ----- ----- ----- -----.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u>하는 자</u>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 -----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체육시설 사
용을 제한하거나 금
지할 수 있다.

1.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는 사
용허가시의 지정기한
까지 별표 3부터 별
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이 종료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정산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제4호에 따른 문화예
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

--.

1. 잔디 보호-----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사용
허가 시-----

-----.

③ -----

--.

1. 잔디 보호-----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사용
허가 시-----

-----.

③ -----

정하는 기한까지 추
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 략)

2. 별표 2 제2호의 생
활체육교실 프로그
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
면율이 가장 큰 사
유 하나만을 적용
한다.

가. ~ 다. (생 략)

라. 13세 이상 55
세 이하의 여성
에 대해서는 잠
실 제1·2수영

----- 사용허가
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사용허가
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
세 이하의 여성
은 수영장 수강
료에 대해 100

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삭 제
사. (생 략)

3. ~ 5.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③ ~ ⑨ (생 략)

마. -----

----- 범위

-----.

바.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현행과 같음)

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

----- 범위

-----.

바.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이라”를 ““운영”이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 중 “잔디보호”를 “잔디 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허가시”를 각각 “사용허가 시”로 한다.

제10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제10조제2호마목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 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 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 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 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 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 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 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 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	수영장	수영, 각종 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창동 1-6))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신약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8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수영장	수영	
	다목적실	생활체육	
	볼링장	볼링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돐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돐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돐구장 체력단련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돐구장 수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육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볼링장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볼링장	성 인	3,500~7,000(1게임, 1레인)
		청소년	2,500~5,000(“)
		어린이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 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 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 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 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 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 23,100	30,800 ~ 46,200	46,200 ~ 69,300	61,600 ~ 92,400	69,300 ~ 103,900	75,400 ~ 113,100
	청소년	8,800 ~ 13,200	17,600 ~ 26,400	26,400 ~ 39,600	35,200 ~ 52,800	39,600 ~ 59,400	43,100 ~ 64,600
	어린이	8,200 ~ 12,300	16,400 ~ 24,600	24,600 ~ 36,900	32,800 ~ 49,200	36,900 ~ 55,300	40,100 ~ 60,100
체력단련장		44,000 ~ 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단위: 원)

시설	수 강 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원)

시설	대상	수 강 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사.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력 단련장		44,000 ~ 66,000					
수영장	성 인	19,000 ~26,000	38,000 ~53,000	57,000 ~80,000	76,000 ~106,000	85,000 ~119,000	92,000 ~129,000
	청소년	13,000 ~17,000	26,000 ~34,000	39,000 ~52,000	52,000 ~69,000	58,000 ~77,000	63,000 ~84,000
	어린이	12,000 ~16,000	24,000 ~32,000	36,000 ~48,000	48,000 ~54,000	54,000 ~72,000	58,000 ~78,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한다.						

아.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수강료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강료를 산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m ²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목동 운동장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21,000~173,000	173,000~181,000	224,900~423,000	
	수영장	09:00~18:00	586,000~635,700	882,000~955,500	1,130,000~1,224,600	
		09:00~12:00	195,000~211,900	294,000~318,500	376,000~408,200	
		12:00~18:00	495,000~536,900	745,000~807,300	979,000~1,060,800	
	다목적실	3시간	12,000~15,600	31,000~40,600	37,000~48,400	
	볼링장	1시간, 2레인	28,000~40,000	30,000~42,000		
비고	1. 모든 사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하 <u>운영</u> 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 ----- ----- “ <u>운</u> <u>영</u> ”이라 ----- ----- -----.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u>하는 자</u> 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u>하는 자</u> ----- ----- -----.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u>잔디보호</u> 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 ① ----- ----- ----- ----- -----.
	1. <u>잔디 보호</u> ----- ----- --

2.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시-----

-----.

③ -----

사용허가 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생략)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삭제

사. (생략)

3. ~ 5. (생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신설>

③ ~ ⑨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수영장 수강료에 대해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

--- 범위-----
-----.

사.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어울림체육센터

③ ~ ⑨ (현행과 같음)

[圖 1] <경향 2002, 9, 11>

서훈복병시립제육시립(제2조, 감현)

[illegible]

[CH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illegible]

기술정보 제공분야	수업장 직책(교수진)	수업, 자료, 도구 직책(교수진)	서울시 도교육청 교육연구실 (02-1234-1234) (전화 1~4선)
교육연구실장	윤서희(교수)	한구, 이구, 함두, 박종경 외 1명	서울시 도교육청 교육연구실 (1234-5678-9012)
기술·교육 지원분야	윤서희(교수)	한구, 이구, 박종경 외 1명	
	최영희(교수)	최영희(교수)	
	수정희(교수)	수정희(교수)	서울시 도교육청 교육연구실 (02-1234-5678)
	김현진(교수)	김현진(교수)	
	윤서희(교수)	윤서희(교수)	

1. 10월 21일

개인사용료(책) 조제(할 권한)

1. 개인연습과동료

(1일, 2계간, 만화 : 4권)

[illegible]

[illegible][illegible]